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 373 호

2001 년 2 월 10 일 토 요일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01-6호(입산통제구역고시) ----- 3

공 고

- 인천광역시공고 제2001-39호(무단방치차량강제폐차공고) ----- 4
- 인천광역시공고 제2001-40호(인천광역시남동구만월종합사회
복지관위탁운영법인모집공고) ----- 6
- 인천광역시공고 제2001-42호(공인개각공고) ----- 8
- 인천광역시공고 제2001-43호(공인폐기공고) ----- 9
- 인천광역시공고 제2001-44호(공인폐기공고) ----- 10
- 인천광역시공고 제2001-45호(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세무사
운영규칙중개정규칙(안)공고) ----- 11
- 인천광역시공고 제2001-46호(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세납세
고지서송달에관한규칙(안)공고) ----- 37
- 인천광역시공고 제2001-47호(담배소매인지정공고) ----- 48
- 인천광역시공고 제2001-48호(담배소매업폐업공고) ----- 49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남동구 편집 : 문화홍보실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01-6호

입산통제구역고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내 산불예방 자연경관유지, 자연환경보전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법 제97조 규정에 의거 등산로를 제외한 임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고시하오니 산림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열람하기 바라며 입산통제구역내 입산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는 사전에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2001. 2.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입산통제기간 출기 : 2001. 2. 15 ~ 2001. 5. 15(90일간)/추가 : 2001. 4. 15 ~ 5. 15(45일간)

동별	지번	구역 면적	비고
계	186필지	509ha	
만수2동	산1-1, 1-2, 1-3, 19, 21-3, 32-1, 32-2, 32-3, 32-13 (9필지)	73ha	만수아파트뒷산
만수3동	산1-4, 2-1, 2-2, 3-1, 6-2 (5필지)	38ha	영풍광업뒷산 동인천교뒷산
만수4동	산40-1, 42-1, 43-1, 44-1, 68, 69, 70, 71-1, 71-5, 71-6, 71-7 (11필지)	38ha	만수아파트뒷산
간석3동	산27-1, 26-1, 32-1, 21, 20-1, 17-1, 18, 19-23, 19-8, 19-3, 17-4, 17-6, 17-3, 26-2, 28-1, 36-1, 36-2, 37-10, 33, 23-1, 35, 34-1, 30-1, 28-4, 28-6, 28-2, 28-3, 28-9 (28필지)	66ha	약사사 및 영풍 광업 뒷산
장수서창동	산147, 146-1, 148, 174-3, 169, 160, 161-1, 162-1, 166, 163, 161, 164, 132-4, 132-3, 135, 137, 154, 152-1, 168-1, 138-2, 138-1, 141, 142, 144, 143, 172, 173, 149, 151, 59, 156, 157, 155, 174-1, 174-2, 137, 135, 132-1, 132-3 (39필지)	75ha	국골산
장수서창동	산68-3, 65-1, 64-2 (3필지)	29ha	소래산
장수서창동	산83, 84, 86, 93, 82-3, 79, 80-1, 78, 77-3, 87, 81 (11필지)	29ha	상아산
장수서창동	산113-1, 109-1, 109-2, 109-4, 95, 96, 97-1, 106-1, 107-1, 110, 111, 112-1, 112-2, 85, 90, 89, 88, 75-5 (18필지)	43ha	관모산
운연동	산74-7, 76, 78-1, 77, 79-1, 75 (6필지)	39ha	관모산
장수서창동	산40, 39, 36-1, 36-2, 34-1, 35, 42-1, 43-1, 44-1, 6, 44-3, 45 (12필지)	14ha	관모산
수산동	산11-1, 11-2, 6-1, 11-4, 29-1, 41-1, 39-1, 39-2, 40-1, 45-1, 45-3, 9, 45-2, 45-12, 2, 45-9, 46-1 (17필지)	19ha	소래선주변
남촌도림동	산2, 4-2, 18, 34-1, 23, 29, 37-1, 37-4, 32, 37-2 (10필지)	16ha	소래선 주변
남촌도림동	산60-6, 56-1, 57, 49-2, 56-2 (5필지)	13ha	오봉산
남촌도림동	산2, 19-4, 28-1, 27-4, 30-1, 24, 23-1, 36, 25, 26-1, 27-1, 30-5 (12필지)	17ha	오봉산

공	고
---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1-39호

무단방치차량강제폐차공고

우리구 관내에 무단방치 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불법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자진이전(폐차)명령하오니, 해당차량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또는 점유자는 본 공고 기간 내에 권리행사 하시기 바라며, 아래 공고 기간까지 자진이전(폐차)하지 않는 차량에 대하여는 강제처리(폐차, 매각)하고 아울러 동법 제81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규정에 의하여 형사고발 할 것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 2. 5.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01년 2 월 7 일 ~ 2001년 2 월 16 일 까지 (10일간)
2. 강제처리(폐차)일시 : 2001년 2 월 16 일 이후
3. 강제처리(폐차)장소
 - 인천폐차사업소
인천 남동구 논현동 423-2 ☎ 814-7077
 - (주)서울폐차사업소
인천 남동구 고잔동 184번지 ☎ 442-6660
 - 기전산업(주)
인천 남동구 고잔동 726-7 ☎ 814-4400
4. 강제처리(폐차)대상 차량 : 서울3호1418 외 5대

강 제 처 리 대 상 차 량

연번	강제처리대상차량		강제처리 대상차량 소유주		방 치 장 소 (인천 남동구)	비 고 (견인보관)
	차량번호	차 명	성 명	주 소		
834	서울3호1418	쏘나타 오토매틱	이인숙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35-6	간석3동 58-1 신명여고 담장	
835	인천31더8404	엑셀 오토매틱	신영무	인천 남구 주안 1297-9	구월2동 1248-57 전원갈비 앞	
836	인천30두5416	콩코드	한순곤	인천 남동 간석동 27-4	구월2동 6-1 간석초등학교 뒤	
837	서울48나1953	프린스 1.8MT	강준기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103-8	구월4동 1279-28 대성빌라 앞	
839	서울47마5476	르망오토	정승호	서울 서대문 홍은 440-3 풍림(아)412호	간석3동 120-7 일주카센터 앞	
840	인천80마5151	와이드 봉고캥캅	최미라	인천 남동 만수 109-311 성원빌라 B01	만수3동 867-18 만수북초등 옆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1-40호

인천광역시남동구만월종합사회복지관위탁운영법인모집공고

인천광역시남동구만월종합사회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및 인천광역시남동구만월종합사회복지관설치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명 칭 : 인천광역시남동구^다만월^음종합사회복지관
2.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3동 844-15번지
3. 설치목적 : 구민의 복지증진 사업
4. 주요사업 : 가정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 청소년복지사업, 장애인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지역복지사업, 재가복지사업.
5. 위탁기간 : 5년
6. 위탁관리규모

구분층별	면 적	현 주 요 용 도	비고
계	1,316.10㎡		
지하1층	327.60㎡	밀알의집(무료급식), 보일러실, 창고	
지상1층	331.30㎡	관장실, 관리실, 이용시설, 노인정(별도)	
지상2층	329.60㎡	상담실, 의료실, 치료실, 청소년공부방	
지상3층	327.60㎡	교무실, 강당, 강의실	

※ 주요용도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위탁법인 신청자격

- 사회복지사업법등 관련법규에 적합한 법인
- 인천광역시남동구만월종합사회복지관설치조례제4조에의한 위탁운영에 적합한 법인
- 주사무소(본점)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위치해 있는 법인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법인 중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법인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으며 건설하고 사업능력이 있는 법인
- 기업, 각종 후원회 등 재원조달 능력이 있는 법인
- 사회복지사등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 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법인
- 재정상 자부담(보조금의 20%이상) 능력이 있으며 사업 경험이 있는 법인

8.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01. 2. 27 ~ 3. 3. 17:00까지
-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사회복지과
- 제출서류
 - 가. 신청서 : 15부
 - 나. 법인설립 등기부 등본 : 15부.
 - 다. 법인정관 : 15부.
 - 라. 법인대표이력서 : 15부.
 - 마. 법인현황 및 법인 설립취지서 : 15부.
 - 바. 법인결산서 및 최근 3년간의 사업실적 : 15부.
 - 사. 재정능력 (보조금의20%이상) 확보 증명(법인명의 발행 통장사본 및 잔액 증명서) : 15부.
 - 아. 사업계획서 : 15부.
 - 자. 기타 위탁운영에 필요한 자료 : 15부.
- ※ 부책으로 만들어 제출23

9. 선정방법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체선정 규정에 의거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10. 선정결과 통보

- 통보일 : 2001. 3. 12.
- 방 법 : 서면통보

11. 협약체결

- 기 간 : 2001. 3. 12. - 3. 14.
- 장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사회복지과

12. 기 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사회복지과(032, 453-23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2001. 2. 7.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1-4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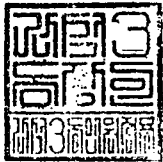
공인개각공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각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 2. 5.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개각사유 : 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3동인(인증기)의 파손
2. 개각 공인 최초 사용 연월일 : 2001. 2. 5
3. 개각·폐기 공인명 및 인영

개 각 공 인		폐 기 공 인	
공 인 명	인 영	공 인 명	인 영
간 석 3 동 장 인 (간석3동민원전용)		간 석 3 동 장 인 (간석3동민원전용)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1-43호

공인폐기공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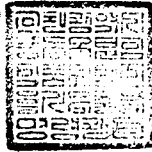
2001. 2. 6.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폐기사유 : 인천광역시남동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남동구식품진흥기금운용관인 및 출납원인의 신조

2. 폐기공인연월일 : 2001. 2. 6

3. 폐기공인 및 인영

폐 기 공 인	
공 인 명	인 영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분 임 식 품 위 생 진 흥 기 금 출 납 명 령 관 인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1-44호

공인폐기공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 2. 7.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폐기사유 : 인천광역시남동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폐지
2. 폐기공인연월일 : 2001. 2. 7.
3. 폐기공인 및 인영

폐 기 공 인	
공 인 명	인 영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구 정 조 정 위 원 회 위 원 장 인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1-45호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세무조사운영규칙중개정규칙(안)공고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세무조사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 2. 8.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조례명 :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세무조사운영규칙중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지방세 세무조사를 납세자권리보호의 강화, 인터넷 사용의 보편
화 등 변화된 세정여건을 반영하여 운영하고,
- 지방세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세무조사시 나타난 일부 미비
점 및 개선·보완 사항을 정비코자 함.

3. 주요골자

- 국세의 전자신고를 지방세 서면조사에 적용하여 납세자는 과세자
료를 인터넷 등을 통해 전자신고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정
보화 시대에 부응한 납세자 편의세정 운영. (안 제2조 제7호 신설)
-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조사착수 5일전에서 조사개시 7일전으로 하
여 납세자권리보호를 강화 함. (안 제17조 1항)

- 세무조사의 연기사유를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도 연기신청 할수 있고, 신청 처리기간을 7일이내로 함.(안 제17조 제2항, 동조 제4항)
- 납세자가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을 경우 변호사 등 조세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하여금 조사에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게 함. (안 제23조 제2항)
- 지방세 세무조사를 직접 방문조사에 착수하거나 서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관리현장”을 교부하여야 함.(안 제27조 제1항)
- 세무조사를 마친 후 납세자에게 결과통지를 하는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을 시 통지를 배제할 수 있는 조항 신설.
(안 제30조 제1호 내지 제3호)
- 세무조사 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법령 및 제도상의 문제점이 시정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자료를 상급기관에 제출 하여야 함.
(안 제31조 제2항)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단체, 개인은 2001년 3월 3일한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종으로 작성)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6동 1008번지, 참조(세무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전화 : 453 - 2241, 2242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법인 및 단체인 경우 그 법인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
번호

나. 개정규칙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세무과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세무조사운영규칙중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제출일시 : 2001. . .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개정이유

- 지방세 세무조사를 납세자권리보호의 강화, 인터넷 사용의 보편화 등 변화된 세정여건을 반영하여 운영하고,
- 지방세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세무조사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개선·보완 사항을 정비코자 함.

☐ 주요골자

- 국세의 전자신고를 지방세 서면조사에 적용하여 납세자는 과세자료를 인터넷 등을 통해 전자신고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납세자 편의세정을 운영 함.
(안 제2조 제7호 신설)
-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조사착수 5일전에서 조사개시 7일전으로 하여 납세자권리보호를 강화 함. (안 제17조 1항)
- 세무조사의 연기사유를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도 연기신청 할수 있고, 신청 처리기간을 7일 이내로 함.(안 제17조 제2항, 동조 제4항)
- 납세자가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을 경우 변호사 등 조세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하여금 조사에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게 함. (안 제23조 제2항)
- 지방세 세무조사를 직접 방문조사에 착수하거나 서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현장” 을 교부하여야 함.(안 제27조 제1항)

- 세무조사를 마친 후 납세자에게 결과통지를 하는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을 시 통지를 배제할 수 있는 조항 신설.

(안 제30조 제1호 내지 제3호)

- 세무조사 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법령 및 제도상의 문제점이 시정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자료를 상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안 제31조 제2항)

☐ 본문

“ 별첨참조 ”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참조 ”

☐ 참고사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세무조사운영규칙중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세무조사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본문중 “검사”를 “심사”로 하고, 동조 제2호 본문중 “지방세무공무원”을 “세무공무원”으로 하고, 동조 제3호 본문중 “검증하기 위한 세무조사를 말한다”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로 하고, 동조 제5호 본문중 “당해”를 “그”로 하고, 동조 본문중 “그 관련인을”을 “당해 납세의무자와 관련이 있는 자를”로 하고,

동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자신고”라 함은 조사대상 납세의무자가 제출할 서류를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한 후 전자서명 및 암호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 본문중 “세무조사”를 “①세무조사”로 하고,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를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수행할 수 있다”로 한다.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제1항 본문중 “통보하여야 한다”를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 제2항 본문중 “기간내에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회보하여야 한다”를 “신속히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 제목중 “공중, 타당성”을 “공정성과 타당성 유지”로 한다.

제10조 제목중 “신고준중”을 “성실신고 준중”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조사대상자는”을 “구청장은 납세의무자의”로 하며, 동조 본문중 “선정하여야 한다”를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 제1항 본문중 “있는”을 “있거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으로 하고, 동조 제2항 본문중 “선정이 되도록”을 “기준에 의하여 선정”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 본문중 “같은 납세자에 대한 일반조사는”을 “동일한 납세자에 대하여 일반조사를”로 하고, “조사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로 하며 “납기된”을 “납기전”으로 한다.

제16조 제목중 “조사기간의”를 “조사시간의”로 한다

제17조 제목중 “조사착수의 예고등”을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등”으로 하고, 동조 제1항 본문중 “일반조사를”을 “세무조사를”로 하고, “조사착수 5일전까지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착수를 예고하는 경우 조사의 실효를 거둘수 없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조사개시 7일전에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대상세목 및 조사사유 등 지방세법시행령 제52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동조 제2항 “일반조사대상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착수를 연기할 수 있다”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 등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조사를 받기 곤란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 동항 제1호 본문중 “천재지변, 화재, 노사분규등으로”를 “화재 기타 재해로”로 하고, “있을때”를 “있는 경우”로 하고, 동항 제2호 “납세의무자의 질병, 장기출장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를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에 응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하고, 동항 제3호 “기타 중복조사 배제등을 의하여 조사착수의 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를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로 하며 동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동조 제3항 본문중 “제1항에 의하여 조사착수를 예고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기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기간 3.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사유 4. 기타 필요한 사항

동조 제4항 본문중 “그 내용을 검토하여”를 “7일 이내에”로 하고, “신속히 결정·통지하여야 한다”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8조 본문중 “실시함에 있어”를 “실시하기 전에”로 한다.

제19조 제목중 “조사기간의”를 “조사기간”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특별한 사유가”를 “사유가”로 한다.

제20조 제1항 본문중 “예외로 한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고, 동조 동항 제 1호 “현행중인 범칙행위를 발견할 때”를 “범칙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발견한 때”로 하고,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서류 등을 영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치증(별지 제1호 서식) 및 영치목록(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 제2항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하고, 동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2조 제1항중 “① 정당한”을 “조사공무원과 조사책임자가 정당한”으로 하고, “조사편의등의 수단으로”를 “수단으로”하고, “조사공무원과 조사책임자에 대하여는 구청장이”를 “경우에는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23조 제목중 “조사권 행사의 제한”을 “조사권 행사의 제한과 납세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로 하고, 동조 제1항 본문중 “당해 납세의무자 및 그 관련인에 대한”을 “조사대상 납세의무자 및 그와 관련된 자에 대한”으로 하고, 동조 동항 “범위내에서만”을 “범위 안에서만”으로 하며 동조 제2항 “당해 조사와 관련이 없는 납세자의 사생활등에 관한 질문등은 일체하여서는 아니된다”를 “납세자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등 조세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하여금 조사에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제24조 제1항 본문중 “종합계획을”을 “종합조사계획을”로 하고, 동조 제2항 본문중 “조사책임자가 직접수립한다”를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5조 제목중 “준비조사”를 “조사준비”로 하고, 동조 제2항 본문중 “준비조사에서”를 “조사준비과정에서”로 하고, 동조 동항 본문중 “준비조사서”를 “조사준비서”로 한다.

제27조 제목중 “조사착수”를 “조사의 착수 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때에는 반드시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를 “①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착수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납세자권리현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때에는 반드시 그 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 서식)를 휴대하고 이를 관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8조 제목중 “조사복명”을 “조사내용 보고”로 하고, 동조 제1항 본문중 “일일복명서”를 “일일보고서”로 하고, “복명한다”를 “보고하여야 한다”로 하며 “업무형평상”을 “업무형편상”으로 하고, “서면복명서를”를 “서면보고서를”로 한다. 동조 제2항 본문중 “조사사항을”을 “조사상황을”로 하고, “복명한다”를 “보고한다”로 하고, 동조동항 제3호 “구청장 또는 조사책임자의 지시가 있는 때”를 “구청장의 지시가 있는 때”로 한다.

제29조 제1항 본문중 “조사복명을” 을 “조사보고를” 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준비조사시” 를 “조사준비시” 로 한다.

제30조 제목중 “고지전 해명기회 부여” 를 “세무조사 결과통지” 로 하고 동조 본문중 “세무조사 후 추정대상이 되는 사항은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해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를 “세무공무원이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폐업 등 조사결과의 통지가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로 한다.

동조 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납기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

동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조사결과의 통지를 하고자 하는 날부터 부과체척기간의 만료일 또는 징수권소멸시효 완성일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

동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폐업으로 인하여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제31조 제목중 “과생자료의 활용 및 통보” 를 “과세정보 통보와 조사기법의 개발보급” 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세무조사 과정에서 파악되는 각종 자료는” 을 “①조사과정에서 파악되는 각종 과세정보는” 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등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를 “등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과세자료 또는 국세와 관련된 자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로 하며,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법령 및 제도상의 문제점이 시정될 수 있도록 시장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 제목중 “조사공무원의 수칙등” 을 “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 으로 하고, 동조 제1항 본문중 “구청장이 조사대상자별로 1매씩 발급한다.” 를 “법 제64조에 의거 구청장은 조사공무원별로 1매씩 발급하고, 퇴직 등 변동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고 파기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 제2항 본문중 ““조사공무원의 수칙”을”을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로 하며 동조 제3항 본문중 “제2항에 규정하는”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별표(조사공무원 행동수칙)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조사공무원 행동수칙**1. 조사공무원의 기본자세**

- 1)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한다.
- 2) 조사공무원은 공평과세 실현 및 재정수입 조달의 주역이라는 긍지와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3)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으로서의 자질향상과 조사기법의 개발을 위하여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 4) 조사공무원은 세정의 최일선 역군으로서 지방공무원의 거울이 됨을 명심하고 조사에 임하여서는 불필요한 언행을 삼가며 항상 친절하고 예의바른 자세와 존대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 5)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세무조사로 인한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 6) 조사공무원은 관련법규를 적용함에 있어 무리하게 확대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 7)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알게된 정보를 법률에 정하여진 경우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8) 조사공무원은 어떠한 청탁이나 부정·불의와도 타협해서는 아니되며 조사착수전, 조사진행중, 조사종결후, 그 어느때에도 식·음료 등 일체의 향응을 제공받거나 금품수수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조사착수 전에 지켜야 할 사항

- 1)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가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수집·분석하는 등 준비조사에 철저를 하여야 한다.
- 2)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 등 관련정보가 사전에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3) 관리자는 조사공무원에게 조사출장전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4) 조사공무원은 소정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출장에 임하여야 한다.

3. 조사를 시작할 때 지켜야 할 사항

- 1) 조사공무원은 조사처에 도착 즉시 조사착수상황, 연락처 등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 세무조사를 착수할 때에는 조사원증을 제시하고 지방세 납세자 권리현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납세자에게 조사사유, 조사기간 및 범위를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 3)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설명으로 납세자의 이해를 구하고 그 사실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지휘에 따라야 한다.

4. 조사진행중에 지켜야 할 사항

- 1) 조사공무원은 조사업무 수행중에 조사목적을 벗어난 사적편의 제공을 일체 요구해서는 아니된다.
- 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납세자의 주택이나 사업장 또는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조사현장에서 발견된 비밀장부나 주요 증빙서류를 납세자로부터 임의 제시 받았을 경우에는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보관할 수 있다.
- 3)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에 의한 조사방법·조사범위·조사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만, 조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에게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 4) 조사내용에 대하여 납세자 또는 납세자가 위임한 세무대리인이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조사현장에서 그 옳고 그름을 다투어서는 아니된다.
- 5) 조사내용의 이견에 대하여 납세자측의 주장이 옳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해야 하며,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되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 6) 조사공무원은 다툼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관련증빙을 확인하여 납세자의 불복청구나 쟁송에 대비하여야 한다.
- 7) 조사공무원은 매일의 조사를 마치면서 납세자의 협조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시해야 하며, 다음 조사일시를 명확히 예고하되 약속일시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납세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 8) 조사공무원은 매일의 조사내용을 관리자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앞으로의 조사방향을 지시받아야 한다.
- 9) 조사공무원은 조사와 관련하여 대내외로부터의 청탁이나 압력을 받은 경우 이를 즉시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조사를 마칠 때 지켜야 할 사항

- 1) 조사공무원은 조사를 마칠때에는 납세자에게 조사가 종결되었음을 알리고, 조사기간동안 성실히 조사에 협조하여준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하여야 한다.
- 2) 조사공무원은 조사중에 제출받은 조사 관련 장부와 증빙서류를 납세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와 증빙의 반환으로 과세에 중대한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납세자의 동의하에 일정기간 보관할 수 있다.
- 3) 조사공무원은 조사종결 즉시 종결복명을 하고,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4) 조사공무원은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전까지 조사적출내용 등 조사진행사항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
- 5) 납세자가 조사내용의 통지를 받고 그 내용에 이의가 있어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6)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과세자료 또는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도상의 문제점을 발견할 경우에는 세법 등 개정건의서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7) 납세자가 권리행사(불복청구, 기타 세법에 의하여 납세자가 갖는 권리의 행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관련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영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조세범처벌절차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납세의무자에 대한
별첨목록의 서류 등을 조사기간동안 당 기관에 정히 영치합니다.

영치사유						
영치기관						
영치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입회인등	소속			성명		
서명날인 거부 부기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별지 제3호 서식)

예치증

소재지(사업장) :

법인명(상 호) :

대표자(성 명) : (당 세)

위 업체에 대한 특별조사와 관련하여 별첨목록의 서류 등을 조사
기간동안 당 관서에서 정치 예치합니다.

200 . . .

소속 :

직급 :

성명 :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세무조사”라 함은 지방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질문·검사권에 의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의무자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 서류, 기타물건을 검사, 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범죄사건조사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 ----- ----- ----- <u>심사</u> ----- ----- -----
2. “조사공무원”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부터 특정납세의무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명령을 받은 <u>지방세무공무원을</u> 말한다.	2. ----- ----- ----- <u>세무공무원</u> ----- -----
3. “일반조사”라 함은 특정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과세요건 성립여부, 과세표준액 및 세율적용의 적정여부를 <u>검증하기 위한 세무조사를</u> 말한다.	3. ----- ----- ----- <u>조사하</u> 는 것을 말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직접조사”라 함은 납세의무자의 사무실,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지등에 출장하여 직접 <u>당해</u> 납세의무자 또는 <u>그</u> <u>관련</u> 인을 상대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5. ----- ----- ----- <u>그</u> ----- <u>당해</u> <u>납</u> 세의무자와 <u>관련이</u> 있는 자를-----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전자신고”라 함은 <u>조사대상 납세의무자가 제출할 서류를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한 후 전자서명 및 암호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을</u> 말한다.

현행	개정안
제12조(특별조사대상자)① 특별조사대상자는 탈세정보자료등에 의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자로 하되, 그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동안의 자진신고납부의 내용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객관적인 선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세무조사 실시 제13조(중복조사금지)① 같은 납세자에 대한 일반조사는 연2회 이상 조사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객관적으로 명백한 세금탈루혐의가 있거나 납기된 징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제16조(조사기간의 제한) (생략) 제17조(조사착수의 예고등)① 일반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착수 5일전까지 예고 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착수를 예고하는 경우 조사의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일반 조사대상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착수를 연기할 수 있다.	제12조(특별조사대상자)①----- -----있거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② ----- ----- ----- 기준에 의하여 선정-----. 제3장 세무조사 실시 제13조(중복조사금지)① 동일한 납세자에 대하여 일반조사를--하여서는 아니된다. ----- ----- 납기전 -----.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조사시간의 제한) (현행과 같음) 제17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등)① 세무조사를-----조사개시 7일전에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대상세목 및 조사사유 등 지방세법시행령 제52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목적 달성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 등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조사를 받기 곤란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1. 천재지변, 화재, 노사분규등으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을 때 2. 납세의무자의 질병, 장기출장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3. 기타 중복조사 배제등을 위하여 조사착수의 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신 설> ③ 제1항에 의하여 조사착수를 예고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기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④구청장은 제3항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연기여부를 신속히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조사기간)구청장은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미리 조사대상자별로 조사기간을 정하여 착수하되, 조사기간은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하여야한다. 제19조(조사기간의 연장의 제한)세무조사를 착수한 후 기한내에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당초의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화재 기타 제해로 ----- -----있는 경우 2.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에 응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주 2.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기간 3.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사유 4. 기타 필요한 사항 ④----- ---7일 이내에-----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조사기간)-----실시하기 전에----- ----- 제19조(조사기간 연장의 제한)----- -----사유가-----

현행	개정안
제20조(수색, 영치의 금지) ①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조세범치벌절차법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세무조사(특별조사를 포함한다) 시에는 납세의무자의 주택 또는 사무실등을 수색하거나 장부, 서류등을 영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0조(수색, 영치의 금지)①----- ----- ----- ----- ----- <u>그러하지 아니하다.</u>
1. 현행중인 범칙행위를 발견할 때 2. (생략)	1. 범칙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발견한 때 2. (현행과 같음)
② (생략) <신설>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서류 등을 영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치증(별지 제1호 서식) 및 영치목록(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장부, 서류등의 예치)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서류등을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치증(별지 제1호서식) 및 예치목록(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장부·서류 등의 예치는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장부, 서류등의 예치)① (생략) ② ----- ------(별지 제3호서식)----- ----- ----- <삭제>
제22조(조사권남용 조사공무원등에 대한 조치)① 정당한 절차와 적법한 방법이 아닌 조사편의등의 수단으로 조사권을 남용한 조사공무원과 조사책임자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조사권남용 조사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조사공무원과 조사책임자가 정당한 수단으로 -----경우에는 구청장은----- -----

현행	개정안
제23조(조사권 행사의 제한)① 당해 납세자의 무자 및 그 관련인에 대한 조사권의 행사는 당해 조사에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하여야 한다. ② 당해 조사와 관련이 없는 납세자의 사생활 등에 관한 질문등은 일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조사권 행사의 제한과 납세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① 조사대상 납세자의 무자 및 그와 관련된 자에 대한 -----범위 안에서만-----. ② 납세자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등 조세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하여금 조사에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조사사무관리	제4장 조사사무관리
제24조(조사계획)① 구청장은 업무량과 인력사정등을 고려하여 연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조사대상자별 조사계획은 구청장의 책임하에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방법, 조사장소, 통합조사, 조사착수예고등을 검토하여 조사책임자가 직접수립한다.	제24조(조사계획)①----- -----종합조사계획을----- ----- ②----- ----- -----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25조(준비조사)① (생략) ② 조사공무원은 준비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여 “준비조사서”를 작성하고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25조(조사준비)① (현행과 같음) ② -----조사준비과정에서----- -----“조사준비서”----- ----- ③ (현행과 같음)
제27조(조사착수)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때에는 반드시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7조(조사의 착수 등)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착수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납세자권리현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때에는 반드시 그 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 서식)를 휴대하고 이를 관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조사복명)①조사공무원은 조사한 사항을 “일일복명서”에 의하여 매일 조사책임자에게 복명한다. 다만, 원격지 조사 등 업무형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복명한 후 조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서면복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조사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사사항을 “조사중간보고서”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복명한다. 1. ~ 2. (생략) 3. 구청장 또는 조사책임자의 지시가 있는 때	제28조(조사내용 보고)①----- -- “일일보고서” ----- -----보고하여야 한다.----- 업무형평상----- ----- --서면보고서를----- ②----- -----조사상황을----- -----보고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구청장의 지시가 있는 때
제29조(조사진행 관리)① 조사복명을 받은 조사책임자는 앞으로 조사할 사항과 새로운 문제점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조사방향을 제시한다. ②준비조사시 도출된 문제점과 조사책임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빠짐없이 조사하고 그 조사내용은 서면으로 복명한다. ③ (생략)	제29조(조사진행 관리)① 조사보고를----- ----- ----- ----- ②조사준비시----- ----- ----- ③ (현행과 같음)
제30조(고지전 해명기회 부여) 세무조사 후 추정대상이 되는 사항은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해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신설>	제30조(세무조사 결과통지) 세무공무원이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폐업 등 조사결과 통지가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납기전 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사결과 통지를 하고자 하는 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 또는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31조(파생자료의 활용 및 통보)세무조사 과정에서 파악되는 각종 자료는 “과세자료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u><신 설></u> 제5장 보 칙 제32조(조사공무원의 수칙등)①조사공무원의 증표는 구청장이 조사대상자별로 1매씩 발급한다. ②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의 수칙”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규정하는 조사공무원의 수칙은 별표와 같다.	징수권소멸시효 완성일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 3. 폐업으로 인하여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제31조(과세정보 통보와 조사기법의 개발 보급)① 조사과정에서 파악되는 각종 과세정보는 -----등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과세자료 또는 국세와 관련된 자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법령 및 제도상의 문제점이 시정될 수 있도록 시장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32조(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①----- -----법 제64조에 의거 구청장은 조사공무원별로 1매씩 발급하고, 퇴직 등 변동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고 파기하여야 한다. ②-----“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1-46호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세납세고지서송달에관한규칙(안)공고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세납세고지서송달에관한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 2. 8.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조례명 :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세납세고지서송달에관한규칙(안)

2. 제정이유

- 동 기능 전환으로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업무가 구에 이관됨에 따라 통장에게 송달에 따른 일정액의 보상비를 지급하고 직접교부 할 수 있도록 송달방법을 개선하여
- 송달불능에 따른 민원발생 요인을 방지하고, 보다 향상된 세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정확하고 책임있는 송달체계를 이루고자 함.

3. 주요골자

- 지방세납세고지서 직접교부대상 세목을 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종합토지세의 정기분납세고지서와 1차 독촉장으로 함.
(안 제2조제2항)

- 납세고지서 교부자는 남동구통·반설치조례에서 규정한 통장 또는 관할 동장이 지정한 자에 한하여 구청장이 지정하고, 송달약정을 체결함. (안 제5조제1항 내지 제2항)
- 송달보상비는 송달부에 기명된 고지서 1매당 송달수량 또는 우편요금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교부지정자는 정기분납세고지서 독촉장 납기한의 익월 10일까지 서식에 의하여 보상비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함. (안 제7조제1항 내지 제2항)
- 교부지정자는 납세고지서 교부시 수령자 및 교부일자 기재 후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안 제9조제1항)
- 교부지정자는 납세자와 그 관계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함. (안 제11조제2항)

4. 의견제출

가. 이 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단체, 개인은 2001년 3월 3일한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종으로 작성)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6동 1008번지, 참조(세무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전화 : 453-2241,2242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법인 및 단체인 경우 그 법인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정규칙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세무과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세납세고지서송달에관한규칙(안)

의안	
번호	

제출일시 : 2001. . .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제정 이유

- 동 기능 전환으로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업무가 구에 이관됨에 따라 통장에게 송달에 따른 일정액의 보상비를 지급하고 직접교부할 수 있도록 송달방법을 개선하여,
- 송달불능에 따른 민원발생 요인을 방지하고, 보다 향상된 세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정확하고 책임있는 송달체계를 이루고자 함.

☐ 주요 골자

- 지방세납세고지서 직접교부대상 세목을 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종합토지세의 정기분납세고지서와 1차 독촉장으로 함.
(안 제2조제2항)
- 납세고지서 교부자는 남동구통·반설치조례에서 규정한 통장 또는 관할 동장이 지정한 자에 한하여 구청장이 지정하고, 송달약정서를 체결함. (안 제5조제1항 내지 제2항)
- 송달보상비는 송달부에 기명된 고지서 1매당 송달수량 또는 우편요금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교부지정자는 정기분납세고지서 독촉장 납기한의 익월 10일까지 서식에 의하여 보상비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함. (안 제7조제1항 내지 제2항)
- 교부지정자는 납세고지서 교부시 수령자 및 교부일자 기재 후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안 제9조제1항)
- 교부지정자는 납세자와 그 관계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함. (안 제11조제2항)

- 교부지정자는 송달업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며 송달업무와 관련한 입증책임 의무가 있음. (안 제12조, 제13조제2항)
- 교부지정자의 제임기간은 남동구통·반설치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임기로 함. (안 제14조)
- 교부지정자에 대한 송달업무처리 정지 및 교부지정자 변경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 함. (안 제15조)

☐ 본문

„ 별첨참조 „

☐ 참고사항

„ 별첨참조 „

남동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세납세고지서송달에관한규칙(안)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세납세고지서송달에관한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법 제51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납세고지서(이하 “독촉장” 포함)의 송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정기분 납세고지서를 직접교부 할 수 있는 남동구통·반설치조례에서 규정한 통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 중 직접교부 대상은 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종합토지세의 정기분납세고지서와 독촉장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납세고지서” 라 함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분납세고지서를 말한다.
2. “독촉장” 이라 함은 정기분 납세고지서의 익월에 발부되는 독촉(최고)장을 말한다.
3. “정기분납세고지서” 라 함은 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종합토지세를 말한다.

제4조(송달업무) ① 지방세납세고지서의 송달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납세고지서의 교부
2. 납세고지서 송달부 작성 및 제출<제1호 서식>
3. 송달보상비 지급신청서 제출
4. 기타 송달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규정한 사항

제5조(교부자 지정) ① 납세고지서의 교부자는 남동구 통·반설치조례에서 규정한 통장에 한하여 구청장이 지정한다. 다만, 통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관할 동장이 지정한 자를 교부자로 지정한다.

② 교부자로 지정된 자(이하 “교부지정자”라 한다)는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약정서를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관련법령 준수) 교부지정자는 송달업무 처리 시 이와 관련한 각종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송달보상비 신청 및 지급) ① 송달보상비는 송달부에 기명된 고지서 1매당 송달수량 또는 우편요금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며, 보상비는 교부지정자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입금 지급한다. 다만, 납세의무자 1명에게 1매 이상 지방세납세고지서를 동시에 교부한 때에는 1매로 보며, 허위로 교부한 때에는 지급한 보상비를 회수한다.

② 교부지정자는 정기분 납세고지서 독촉장 납기한의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보상비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동월 20일까지 보상비를 지급한다.

③ 송달업무 처리 도중 인천광역시남동구통·반설치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촉된 때에는 해촉당시 교부한 사항에 대하여만 지급한다.

제8조(납세고지서등 인계인수) 구청장은 지방세납세고지서와 송달부를 납기개시일 5일전까지 납세고지서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 송달부를 교부지정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고지서를 인수한 교부지정자는 납기 개시일 전일까지 구청장이 교부 위탁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9조(송달부 작성) ① 교부지정자가 납세고지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송달부에 수령자와 교부일자를 반드시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교부지정자는 송달불능고지서에 대하여는 송달불능 사유를 기재한 송달부와 납세고지서를 납기개시전일까지 구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0조(송달업무 업무승계) 남동구 통·반설치조례에 의하여 통장이 변경되는 경우, 지방세 송달업무는 새로이 위촉된 통장이 승계할 수 있다.

제11조(송달의무) ① 구청장은 납세고지서 직접교부로 인한 공익성 훼손방지 및 납세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교부지정자는 납세고지서 송달과 관련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납세자와 그 관계인의 개인정보(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납세자에 대한 모든 정보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비용부담) 송달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교부지정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3조(배상 및 입증책임) ① 교부지정자는 송달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모든 책임을 다하되 관련규정 미 준수, 납부기한 경과 후 교부 또는 허위송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교부지정자는 송달업무와 관련한 입증책임 의무가 있다.

제14조(교부지정자 재임기간) 교부지정자의 재임기간은 남동구 통·반설치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임기까지로 한다.

제15조(해지) 교부지정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구청장은 송달업무 처리를 정지시키거나 교부지정자를 변경할 수 있다.

1. 송달업무 처리에 있어 부당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본 약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송달업무 관련법령의 개정이나 이를 위반한 경우
4. “통·반설치조례” 제5조에 의하여 교부지정자의 해촉
5. 교부지정자의 사정으로 인한 약정의 정지 또는 해지가 필요한 때
6. 송달보상금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거나 집행이 정지된 때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세 납세고지서 송달부

[illegible]

<별지 제3호 서식>

_____세 고지서 _____인수증

☐ 세 목 :☐ 품 명

1. 고지서 수량 : 매

2. 송 달 부 : 부

위의 물품(고지서 및 송달부)을 인수하였음을 확인 함.

2001. .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 통장 (인)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1-47호

담배소매인지정공고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9항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지정 처리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1. 2. 12.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담배소매인지정 현황 】

소매인구분	지정일	지정번호	성명	사업장 주소	상호	비고
일반소매인	2001.2.7	2001-22	이상용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3동 77	뽕뽕이슈퍼	

끝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1-48호

담배소매인폐업공고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의2제5항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업 폐업 처리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1. 2. 12.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담배소매업폐업신고 현황 】

구 분	폐업신고일	지정번호	성 명	사업장주소	상 호	비고
일반소매인	2001.2.5	04-가-2359	민 길 영	간석1동 501 극동상가 101호	극동비디오	
일반소매인	2001.2.6	04-가-2612	이 치 선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3동 68-9	큰고을해물탕	

끝.

